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006
----------	-------

발의연월일 : 2026. 5. 18.

발 의 자 : 권향엽 · 이주희 · 문진석
박용갑 · 염태영 · 이기현
장종태 · 김 윤 · 채현일
박지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정감사를 마치면 위원회는 지체없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정부 및 공공기관은 보고서에 따른 시정요구를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그런데 국정감사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당한 인적·행정적 자원과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국정감사의 결과보고서 채택률은 약 70%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따라 감사 결과가 확정되지 못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처리 의무도 부과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정부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정감사 주요 실시내용에 대한 후속조치

를 점검하도록 하여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5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국회입법조사처는 제4항에 따른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 보고를 점검할 수 있다. 다만, 국회가 제1항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하지 않았을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주요 실시내용에 대한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 후속조치를 점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부 등의 국정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① ~ ④ (생략)</p> <p><u><신 설></u></p> <p>⑤ · ⑥ (생략)</p>	<p>제16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① ~ ④ (현행과 같음)</p> <p><u>⑤ 국회입법조사처는 제4항에 따른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 보고를 점검할 수 있다. 다만, 국회가 제1항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하지 않았을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주요 실시내용에 대한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 후속조치를 점검할 수 있다.</u></p> <p>⑥ · 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p>